

선 거 관 리 규 정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본 회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 3 조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및 임무)

-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회 투표권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이사 3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총회개최 4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반드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 등록 서류심사를 마친 후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입후보 등록 신청서, 추천서, 선거인명부, 입후보자 등록 관리대장, 선거운동원 인적대장, 투표용지작성 등은 사무처 직원에게 위임한다.

제3조의 1 (선거관리위원의 투표권)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선거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4 조 (선거인)

- ① 총회의 선거인단은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권을 행사한다.
- ② 정관 제18조에 의한 본회 대의원 배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회비납부 3년 기준 회비납부지회는 회비납부 인원 50명당 1인으로 선정한다. (지부는 30명당 1명을 배정한다.)
 2. 전국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되, 선거 30일전까지 최근 3년간의 회비납부 중 최소 1년 이상의 회비납부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연직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 직영회원은 중앙회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 ③ 감사는 독립된 기구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어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 5 조 (대의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이사회에서 제명 결의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직을 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발견되어 임직원을 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6 조 (피선거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 또는 본 회 정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의 선고 받은 자.
7.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직을 사직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발견되어 사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정관 제6조에 의거 본인 명의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
10. 회원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7 조 (등록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사항을 총회개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 공고는 중앙회 사무처에 대자보로 공고하고 각 지회에 우편으로 공고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 8 조 (입후보 등록)

- ① 회장 또는 지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전에 별표 입후보등록 구비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등록은 별표 서식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1/5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복수 추천할 수 없다.
- ③ 회장 입후보자는 중앙회, 지회(지부), 신문사 등 기타 모든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④ 낙선자는 타 임원으로 모든 직에 재 출마 할 수 있다.
- ⑤ 사표 수리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총회에서 하기로 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에게 대의원의 개인정보 중 업소명, 성명, 전화번호 정도만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입후보 등록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에게 통보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선거인의 명부 열람)

선거인이나 피선거권자는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등록무효)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후보 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입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선거운동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1을 위반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 1.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평 회원 중 3인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 2.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중앙회 및 지회 (지부) 조직을 문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선 후에도 당선을 무효로 한다.
 - 3. 입후보자는 개인으로 선거홍보물을 선거인(대의원들)에게 발송할 수 없으며, 선거홍보물을 발송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선거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 인준 후, 각 선거인 (대의원)에게 직접 발송한다. 이때에 우편물 발송 비용은 공탁금에서 지출한다.
 - 4. 선거와 관련된 집회는 집회 3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운동 관계자 이외의 선거 운동을 금한다.
 - 6.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을 제외하고 일체의 서명날인 운동을 금한다.
 - 7. 선거를 목적으로 금품을 기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을 필한 익일부터 선거일 전날 24시까지로 한다.
- ③ 전항을 위반할 때에는 선거 운동의 제한 또는 입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 조 (선거비용)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자비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사용명세서 및 증빙 영수증을 당선 후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회는 지회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입후보자 등록 공탁금)

① 중앙회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탁금은 이천사백만원으로 하고 당선자는 공탁금 전액을 중앙회로 귀속한다.

총회 참석 대의원 1/5 이상을 득표하였으나 낙선한 입후보자에게는 공탁금 중 총회 및 선거 관리운영비로 35%를 제외한 공탁금 잔액 65%를 선거 종료 후 반환한다. (지회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낙선자 중 총회 참석 대의원 1/5 미만을 득표한 자의 공탁금 잔액 전액은 중앙회에 귀속한다. 이때에 득표율은 사사오입을 불허한다.

③ 당선된 자는 5천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서 (4년)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중앙회는 이를 공증한다.

④ 단독 입후보인 경우에는 공탁금 전액과 찬조금으로 총회 및 선거관리 운영비 일체를 충당한다.

제 4 장 선거와 투표

제 15 조 (선 거)

선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실시한다.

1. 회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때
2. 회장이 잔여임기 1년 이상을 남겨두고 사임하거나 궐위 또는 불신임으로 총회에서 해임된 때(유고 시 포함)

제 16 조 (선거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7 조 (투표)

①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와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투표용지는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한다.

④ 기호 추첨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 아래 추첨한다.

⑤ 투표는 투표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와 대조한 후

용지를 교부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표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제 18 조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지정하는 2인으로 한다.

제 5 장 개표 및 당선확정

제 19 조 (개표관리)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개표한다.

다만 개표 업무를 사무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0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규격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없는 것
3. ○표를 2개 이상 한 것
4. ○표시가 아니고 인장이나 서명한 것
5. 후보자간의 중간선에 ○표한 것

제 21 조 (당선확정)

- ① 최고 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②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③ 2차 투표에서도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 확정한다.
- ④ 단일 입후보로 출마 한 때에는 신인 투표로 당선을 확정 한다.

제 6 장 재 선거

제 22 조 (재선거)

- ① 선거가 전부 무효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재선거의 방법과 절차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 23 조 (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중앙회이사회가 결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지회(지부)도 이를 준용한다.
2. 본 규정이 정관과 상이한 조문, 조항은 정관에 준한다.

〈별 표〉

회장 입후보 등록 구비 서류

- | | |
|-----------------------|----|
|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 1통 |
| 2. 추천서 (재적대의원 1/5 이상) | |
| 3. 인감증명서 | 1통 |
| 4. 이력서(사진부착) | 1통 |
| 5. 영업신고증 사본 | 1통 |
| 6. 주민등록등본 | 1통 |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통 |